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0014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최단비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0. 10. 13.

판결 선고2021. 1. 12.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867,775원 및 그 중 20,867,743원에 대하여 2019. 1. 2.부터 2019. 2. 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8.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8. 7. 3. 접수 제28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는 2016. 5. 2. 피고 A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간 2016. 5. 2.~2021. 4. 3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하고, 보증대상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7. 2.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8.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 A는 2018. 8. 1.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이후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2018. 9. 3.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D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1. 2. 이 사건 대출원리금 20,985,1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2019. 1. 2. 기준으로 20,867,775원(= 대위변제금 20,985,133원 - 회수금 117,390원 + 확정지연손해금 32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변제일로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1),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당진시청, 예산군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20,867,775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20,867,743원(= 20,985,133원 - 117,390원)에 대하여 변제일인 2019. 1. 2.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9. 2.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및 무자력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그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직후 보증사고 발생으로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한편, 피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피고 A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피고 B은 전단지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이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전혀 모르던 피고 A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매수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는 등기부상 아무런 제한물권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 B은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인 점, 이 사건 주택이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피고 B은 여윳돈 11,000,000원, 신용대출금 20,000,000원, E에 대한 대여금 19,800,000원 등을 합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피고 A에게 실제로 지급했다.

2)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B의 선의 여부를 보건대, 을 제1,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조합 내촌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8. 7. 2. 당시 이 사건 주택은 등기부상 아무런 제한물권 또는 보전처분이 없었던 사실, ② 피고 B이 2018. 6. 28. G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③ E이 2018. 7. 6. 피고 B의 계좌2) 로 19,8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에서 피고 A의 계좌3) 로 49,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조합 내촌지점, 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I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A는 2018. 7. 2. 피고 B로부터 1,000,000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8. 7. 3. 먼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7. 6. 49,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통상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무이행 방법은 매우 이례적인 점(위 지급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인 2018. 7. 2.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② 피고 A의 계좌에서 2018. 7. 8. E의 계좌4) 로 5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다시 E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18. 7. 12. 20,000,000원, 2018. 7. 16. 11,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이 이체되었는바(2018. 7. 6.자 19,800,000원까지 더하면, 이 사건 매매 직후 E이 피고 B에게 송금한 액수는 이 사건 매매대금과 비슷한 50,800,000원이다), 결과적으로 자금 흐름이 'E → 피고 B → 피고 A → E'으로 이어져 E을 통해 피고들 사이에 매매대금 수수가 있었던 외형만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들 사이에 매매대금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A의 계좌를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도 피고 B의 어머니인 C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바(2018. 4. 19. 3,000,000원 입금, 2018. 5. 16. 3,000,000원 입금, 2018. 6. 14. 1,000,000원 입금 등), 피고

A와 C은 적지 않은 액수의 금전 거래를 여러 차례 할 정도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 A를 전혀 몰랐다는 피고 B의 주장과 어긋나는 점, ④ 피고 B은 '피고 A 및 E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위 각 금전 수수 경위를 설명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법원이 제3차 변론기일에 석명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들은 아무런 답변 없이 제4차, 제5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그밖에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기

별지

- 1) 피고 A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 2) G조합 신평지점, 계좌번호 J, 이하 '피고 B의 계좌'라 한다.
- 3) F조합 내촌지점, 계좌번호 K, 이하 '피고 A의 계좌'라 한다.
- 4) H은행, 계좌번호 L, 이하 'E의 계좌'라 한다.